

“돼지고기”상공자원부에서 대일 수출 유망 품목으로 선정

상공부는 돼지고기를 대일수출 유망품목으로 지정하여 해외시장 개척기금 활용시 우선 지원토록 조치하였다.

선정분석방법에 따르면,

1. 대일 수출실적이 2백만불 이상인 주요품목중 최근 3년간 ('91-'93년)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품목을 제외한 여타 품목 가운데 대일수출이 증가하거나 일본 수입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품목,

2. 일본 수입규모 100억엔 이상, 우리제품의 수입점유율 10%미만인 품목-시장개척의 여지가 큼으로 공세적인 일본진출 필요. 집중적인 육성방안 검토

3. 대만이 수출을 특화한 품목으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일본수입시장 고려시 유망.

4. 해외시장 개척기금으로 우선 지원토록 조치.

돼지고기 수출원료돈 생산농가 구조 개선 지원 사업실시

농림수산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돈육의 일본 수출을 증가시킬수있는 방안으로 수출원료돈을 생산하는 농가에 1두당 1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94년부터 냉장돼지고기 수입개방에 앞서서 생산농가의 구조개선 계약생산. 규격돈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한몫을 차지할것으로 생각되나, 시행원년이기 때문에 몇몇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정착되면 대일 돈육수출에 한층 활기를 떨것으로 생각된다.

1. 자금지원내역

수출업체	사업계획		지원단가	사업비지원액			
	사업량	수출량		보조	용자	자담	계
18개업체	백만두	12천톤	1만원/두	1백억원	-	-	1백억원

2. 자금지원조건

- 재 원: 축산진흥기금
- 지원체계: 농산부-축협중앙회-축협도지회-수출업체-양돈농가
- 지원대상: 수출업체와 돼지고기수출 원료돈생산계약 체결 양돈농가
- 지원액: 수출원료돈 1두당 10,000원
- 자금관리: 축협중앙회

냉장 돼지고기와 베이컨의 수입자유화

'94년 1월1일 부터 냉장돼지고기와 베이컨이 수입자유화 된다. 양돈가, 정부, 관련업계들은 촉각을 곤두세워 수입돈육의 대처방안을 강구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대만, 미국, 덴마크로 이 3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의 돼지고기 가격은 우리나라 돼지가격의 1/2~1/4가량싸다. 덴마크의 경우 거리가 멀어 수송에 어려움이 있고 EC공동체內에 수출을 몰두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대만은 축산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돼지사육의 두수가 감소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냉장돈육과 베이컨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보이나, 미국측은 한국의 검역방법이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되며 한국의 유통업자들이 냉장육을 다룰줄 모르고 냉장육을 유통시킬 시설이 미비하여 큰기대를 하지않는다고 한다.

또한 국내 식품관련 법규에는 -2℃~0℃의 포장육 유통기한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돈육이 포장육이 아니더라도 "냉장" 용어의 정의상 포장육과 똑같은 유통기한의 적용을 받아야 할것이다. 베이컨의 경우도 냉장에서 15일간의 유통이 가능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우도 국내의 식품법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것이며 이럴경우 수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햄·소세지 즉석판매점 등장

최근 몇몇 백화점에는 햄·소시지를 즉석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소비자로부터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경햄(주)가 현재 유일하게 즉석판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훈제기·열탕기·혼합기를 갖추고 제조를 하고있다. 올해초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신설되었고 평수에 제한없이 일정시간의 위생교육만 받으면 즉석판매를 할수있으므로 기술집

약적영업형태인 중소기업체나 식육점에 확대되어갈 전망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통조림 산업피해 구제조치 '93.년 7월이후 종료

한국육가공협회는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한 수입제품의 수입량 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큰바, 산업구제조치를 통하여 '90년 5월부터 '91년 6월 까지 긴급관세 50%와 구제조치 연장 ('91.7~'93.6, 긴급관세 40%)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93년이후로 지금까지 국내돈육통조림의 소비는 둔화되고 수입캔의 소비량은 증가되는데, 이유는 국내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자의 가계비 지출억제가 상대적으로 저가(국내가격의 반값)인 수입캔의 소비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구제조치의 원칙은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라고 정부측은 대변하지만, 관세율이 30%인 기본관세율로 인화된 지금, 9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안에 국내유통량의 50% 이상이 수입캔으로 대체될 것으로 업계들은 내다 보고 있다.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 16,000톤. 이는 8톤트럭 2,000여 대분으로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다.
-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종류별 구성)
- 현재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 1.48kg을

계	일반쓰레기	연탄재	비고
16,200톤 (100%)	12,700 (78%)	3,500 (22%)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1,900톤

96년까지 1인 1일 1.1kg으로 억제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한다.

· 1992년중 수집물량 64,669톤, 판매대금 25억원으로 판매대금을 불우이웃돕기등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보건사회부령 제910호-

보건사회부는 1993년 7월3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했다.

■ 주요골자

1. 식품제조·가공업업 업종별 시설기준중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큰부담이 되고 있는 작업장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검사실에 비치하여야 할 실험검사 기계, 기구류 등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안 제20조 및 별표8)

2. 제조가공한 식품을 업소내에서 판매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대상 식품을 정함

(안 별표8 제2호 및 별표9의2)

3. 식품의 품목제조신고제도에 있어 지금까지는 사전에 신고한 후 생산하도록 하였으나 제품생산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상 문제가 적은 품목은 품목제조허가에서 품목제조신고로, 품목제조신고에서 자유품목으로 각각 조정함

(안 제24조, 제25조 및 별표9)

할인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93-14 호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할인특별판매행위의 유형및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할인특별판매행위(이하“할인특별”라 한다) 라 함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용어여하에 불구하고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특별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염가판매라 함은 상설매장 또는 임시로 특설매장을 설치하여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 상품 또는 하자가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점포정리 판매라 함은 폐업 또는 점포이전을 목적으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가격인하 판매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인하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유사용어 사용금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특별매가 아닌 경우에는 바겐세일, 대특매, 특매할인, 특가판매 기타 할인특별매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의 적용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소매업진흥법상 개설허가를 받은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 (당해 업체내의 임차점포를 포함한다.) 를 영위하는자.

2. 도소매업진흥법상 지정연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영점포 및 소매상인 슈퍼마켓(서울특별시 250㎡이상, 기타지역 165㎡이상)을

영위하는자

3.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식품, 일용잡화 이외의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로서 그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전문점을 영위하는자.

4.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거나 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영점, 대리점, 특약점등 (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3조 또는 제5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제 5 조 (광고방법)

사업자가 할인특매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표시 또는 광고(TV, 라디오 광고시는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만을 명시할 수 있다)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 다수인 때에는 주요상품만을 표시 또는 광고 할 수 있다.

1. 기간

2. 대상품목의 종류

3. 최근상당기간 자기가 취급한 상품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중전거래가격”이라 한다)과 할인특매가격의 비교 또는 중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

제 6 조 (중전거래가격의 기준)

①제5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최근 상당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할인특매개시 전 날부터 최소한 20일간을 말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중 상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중전 거래가격은 변동된 가격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을 다수의 대리점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의 경우 중전 거래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가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할인특매를 하는 경우로서 중전거래가격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중전거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 (실시기간의 제한 및 산정원칙)

①사업자가 할인특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역년을 기준으로 연간 60일이내로 하되, 1회의 실시기간은 1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휴일에 관계없이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할인특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2개 이상의 점포 또는 대리점등에서 각각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할인특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기간을 그 사업자의 할인특매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점포 또는 대리점등이 특별시, 직할시, 도단위의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사업자가 성격이 현저히 다른 상품을 각각 다른 유통체계를 통하여 할인특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현금판매, 신용판매, 통신판매등의 판매방법에 따라 할인율이 5%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기간을 당해 사업자의 할인특매실시기간에 합산한다. 다만, 그 각각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순기간으로 계산한다.

제 8 조 (부당한 할인특매)

사업자는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자가 표시·광고한 기간을 초과하여 할인특매를 실시하는 행위

2. 할인특매를 위한 염가상품을 별도로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이를 고가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

3. 종전거래가격과 할인특매가격의 차이또는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할인특매 직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4. 특별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상품을 할인특별판매하는 행위

5.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이 20일 이상 종전거래가격 이상으로 환원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제4조 제1호의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에서 임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의 할인특매 실시기간과 별도로 표시·광고를 통하여 할인특매를 실시토록 함으로서 마치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이 할인특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 9 조 (부당한 표시·광고)

사업자가 할인특매등을 실시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제 할인특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 (광고 또는 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포함한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실제로는 조약상품인데도 정상적인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3. 할인폭이나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4. 일부상품 또는 일부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5.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6. 할인특매실시기간중 판매할 수 있는 상당한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하여 재고량이 충분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7.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염가판매, 점포 정리판매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만, 비교가격은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비교가격은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비교가격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재고품인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아울러 명시하여야 한다.

9. 제2조제4항의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인하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하율을 표시·광고하거나 인하시점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가격인하사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만, 비교가격은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11.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12. 기타 사용하는 용어에 불구하고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소비자에게 그 매장 대부분이 할인특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제10조(탈법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이 고시에 정한 금지사항을 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는 시행과 동시에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1-1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제7조제1항에서 정한 할인특매기간 60일은 1993년도의 경우 1993년 1월1일부터 1993년말까지로 한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축 수수료 조정

한국축산물 위생처리협회는 도축장에 대한 경영실태와 도축에 소요되는 적정관리를 산정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하였고 도축수수료의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여 자율화가 승인되었다.

<도축수수료 조정액>

축종	현행	조정액	시행일
소	24,000-27,600	39,000이내	93.11.1
돼지	4,900-6,000	8,200이내	부터

새우살이 함유된 육가공 식품과 그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91-1133
공고번호: 93-5201
특허청구의 범위

1. 돈육 또는 가금육과 부원료 및 조미료로 제조된 육가공 식품에 있어서, 순수 새우살이 5~20중량%또는 순수 건조 새우살이 3~10중량%로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새우살이 함유된 육가공 식품.

2. 돈육 또는 가금육과 순수새우살 5~20중량%또는 순수 건조 새우살 3~10중량%를 절단한 후, 이를 부원료 및 조미료와 함께 진공혼합기에 넣고 10~30분간 혼합한 다음, 내포장재에 충전시킨 후 열처리하여외포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새우살이 함유된 육가공 식품의 제조방법.